

2023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6 인	0 인

1.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10월 16일)

2. 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본관) 2층 회의실(원격화상회의)

- 원격영상회의 환경: 주소: <https://shinhanuniv.webex.com/meet/mission86>

3. 임원 출 · 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6인) : 변도윤, 강성종, 김문수, 박정호, 이성희, 김종효

※ 참석자 중 김문수, 김종효는 원격화상회의로 참석하다.

○ 불참 임원

- 이사(1인) : 김관목

- 감사(2인) : 지후식, 배시영

4. 심의 · 의결 안건

1)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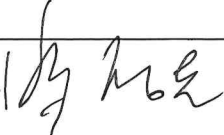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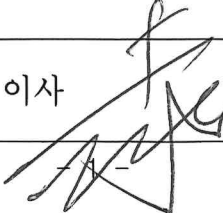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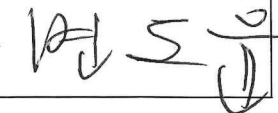
2)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규정 · 개폐에 관한 사항

4)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

5. 보고 안건

1) 신한대학교 예산 전용 보고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6. 회의 내용

[전차 회의록 보고]

이사장 변도윤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대표 간서명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사무국 국장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사장 변도윤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 강성중 : 회의록에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자고 하다 >

이사장 변도윤 : 전차 회의록은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언하다.

[개회선언]

이사장 변도윤 :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형성 국장님께서서는 성원보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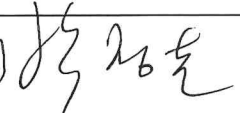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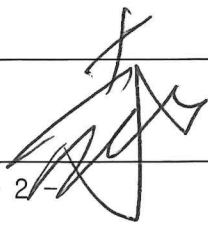
사무국장 장형성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8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문수 이사님, 김종효 이사님이 원격으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회는 전 과정이 녹화되며, 녹화 파일은 증빙자료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김문수 이사님과 김종효 이사님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신 관계로 회의록 서명은 심의의결서 전송 및 회신 받는 것으로 진행함을 설명하다.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 이사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거수와 함께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이사 7분 중 6분이 참석하셔서 의사정족수가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2023년 제10차 이사회 안건을 일괄 상정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 변도윤 : 본 이사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심의·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 >

이사장 변도윤 : 제1호 안건으로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흥고등학교 우등한 행정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	이사 1 	이사 	이사 변도윤 
-----	--	---	--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행정실장 우동한 : 본 안건은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흥고 교장 명예퇴직 신청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학년도 물리과목 일반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변도윤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도윤 : 특별한 퇴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행정실장 우동한 :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다.

이 사 이성희 : 선순환의 역할로 좋은 제도로 보이며,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종효 : 동의하다.

이 사 강성종 : 재청하다.

<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의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변도윤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인 신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호 안건 :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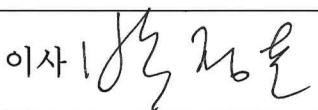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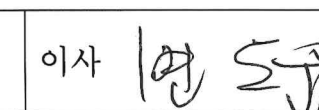
이사장 변도윤 : 제2호 안건으로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형성 법인 사무국장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장형성: 본 안건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제6조3항과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2항을 근거로 미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원 보수, 교원 및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사장 변도윤: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강성종: 미운영 수익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변도윤: 징계사항을 반영하는 것 또한 이사회의 권한이 축소가 되더라도 교육부 지침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문수: 대학 규정 제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추가 문의하다.

사무국장 장형성: 교육부 지침 및 대학의 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추가 설명하다.

이사장 변도윤 : 의견을 토대로 본 안건인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문수: 동의하다.

이 사 박정호: 재청하다.

<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변도윤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인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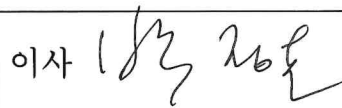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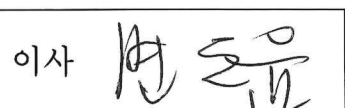
< 제3호 안건 : 법인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사장 변도윤 : 제3호 안건으로 법인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형성 법인 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사무국장 장형성 : 본 안건은 법인 규정 2건의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개정과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개정 사유로는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며, 재심위원회 규정 폐지 사유로는 직원의 징계절차를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상 불필요한 중복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사장 변도윤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강성종 : 규정 개정건에 대해 세부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장형성 : 세부적인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

이 사 김문수 : 수익사업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다. 계약 체결 후가 아닌 체결 전에 보고하게끔 문구를 변경 하는게 어떠한지 제안하다.

이사장 변도윤 :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강성종 : 문구를 명료화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김문수 : 네 좋습니다.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사전보고 등 절차나 문구를 명료화하고 구체적으로 단일 금액 계약 체결의 경우로 한정하는 등 정확하게 규정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국장 장형성 :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강성종 : 해당 사항은 세부적으로 안건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이므로 유예하고 다음 이사회로 넘기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다.

이 사 박정호 : 유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장 변도윤 : 유예하는 것에 재청합니다.

< 제3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부결에 대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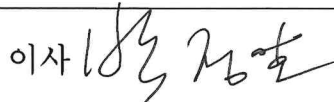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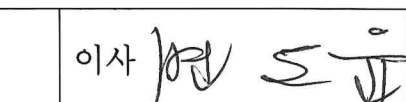
이사장 변도윤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안건 법인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안건 :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

이사장 변도윤 : 제4호 안건으로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세훈 예산처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예산처장 정세훈 :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은 89,325,001천원으로 2차추경예산 대비 1,383,855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등록금 수입·지출 57,674,297천원,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 32,793,70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학부 수업료 감소에 따른 예산 재편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사업 등 외부사업 반영, 적립금 인출 및 사용에 따른 예산편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성입니다. 자세한 세부 세입세출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변도윤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도윤: 미등록생 등에 대해서도 반영이 된건지 질의하다.

예산처장 정세훈: 네 미등록생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 강성종 : 학령인구감소, 물가상승 등의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의 2023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이성희 : 동의하다.

이 사 박정호 : 재청하다.

< 제4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 안건 신한대학교 2023회계연도 3

이사장 변도윤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 안건 신한대학교 2023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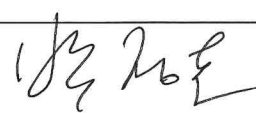
[보고사항]

1.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보고

[폐회선언]

이사장 변도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저와 박정호 이사님, 그리고 이성희 이사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2023.10.24.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변도윤 변도윤

이 사

김관목

이 사

강성종 강성종

이 사

김종효 김종효

이 사

박정호 박정호

이 사

김문수 김문수

이 사

이성희 이성희

감 사

지후식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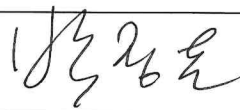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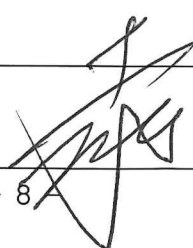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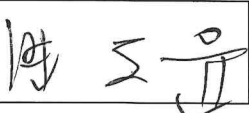
배시영

간서명	이사 박정호	이사	이사 변도윤
-----	--------	----	--------

[원격회의 중방-화면캡처]

- 원격회의의 캡처화면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1] 싡흥고등학교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학교법인 싡흥학원 정관 제39조 9항, 제46조의2, 제46조의3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35760
- 싡흥고등학교-11013

□ 싡흥고등학교 교장 명예퇴직 신청

직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교장임기	명예퇴직희망 (예정)일	퇴직 사유
교장	권윤희	1965.02.08.	1990.05.01.	2022.03.01.~ 2026.02.28.	2024.02.29.	명예 퇴직

□ 명예퇴직 신청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함.

※ 사립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 교육청 심사 결과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교사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며, 다음학년도 물리 과목 결원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학교법인 싡흥학원 「정관」 제39조제9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35760(2023.10.04.) 공문

9. 사립학교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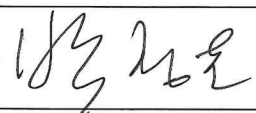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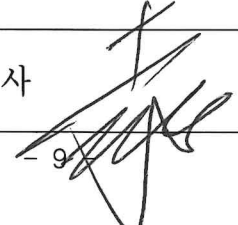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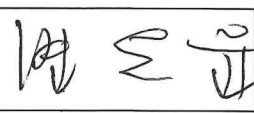
- 사립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

- 1) 현 법인에서 교장으로 승진 임용 (타법인 교원에서 현 학교 임기제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되고,
- 2) 학교법인 정관에 교사 재임용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며,
- 3) 현 교장 임기만료 시 교사로 재임용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함.

※ 학교(법인)에서는 자체규정상 명예퇴직이 가능한 경우(교장 중임의결 포함)에 한해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관변경 등 사전 조치

<학교법인 싡흥학원 정관 제39조>

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0.>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2]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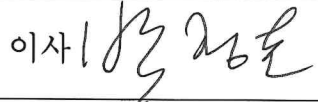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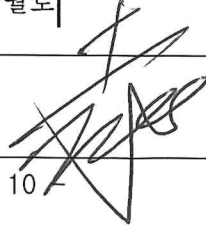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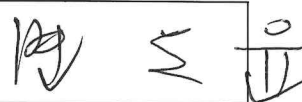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3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2항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5123('23.06.05.)

□ 정관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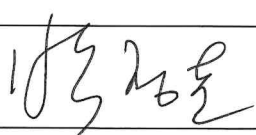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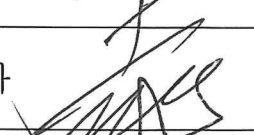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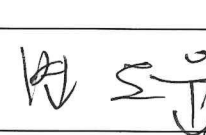
- 미운영 수익사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원 보수에 대한 사항과 교원 및 직원의 재심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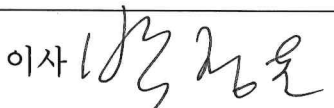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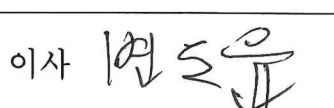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6., 2021. 3. 31., 2023.06.13.> 1. 신한대바울요양병원 2. 신한대학교의원(호원) 3. 신한대학교의원(청사) 4. 신한대학교치과의원 5. 신한메디컬센터 6. 씨티프라자 7. 주식회사 케이파워 [본조신설 2017. 12. 28.] [전문개정 2020. 12. 11., 2021. 2. 4.]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1. 신한대바울요양병원 2. 신한메디컬센터 3. 씨티프라자
제33조의2(수익사업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에 둔다. <개정 2021. 2. 26., 2021. 3. 31., 2023.06.13.> 1. 신한대바울요양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07, 지하2층~지상8층 2. 신한대학교의원(호원)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0-1, 1층~2층 3. 신한대학교의원(청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6층 4. 신한대학교치과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0-1, 3층 5. 신한메디컬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제33조의2(수익사업장의 주소) 제33조에 의한 사업장별 주소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한대바울요양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07, 지하2층~지상8층 2. 신한메디컬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0-1 3. 씨티프라자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10-1 6. 씨티프라자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7. 주식회사 케이파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전문개정 2018. 10. 30., 2020. 5. 29., 2020. 12. 11., 2021. 2. 4.]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에 금지) ①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0.>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에 금지) ①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0.>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63조(징계규정)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원 징계에 관한 기준설정·징계절차·징계의 양정과 감경·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8.]	제63조(징계규정)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원 징계에 관한 기준설정·징계절차·징계의 양정과 감경·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단, 대학의 경우 대학 징계규정으로 정하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직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생계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13. 8. 8.]	제6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직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일반의 표준생계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제69조(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어야 한다. ② 단, 대학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대학에 따로 두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현 행	개 정(안)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대학에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대학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신 설>	며 구성과 절차는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3]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에 관한 사항

□ 관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 [3-1-14] 「재무회계 규정」 제15조(예산의 편성절차)
- 예산팀 2023-374(2023.09.25.) “2023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보고”

□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1. 학부 수업료 감소에 따른 예산 재편성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외부사업) 예산 편성
 3. 적립금 인출 및 사용에 따른 예산 편성
- ※ 학부 수업료·외부재정지원사업·기타 수입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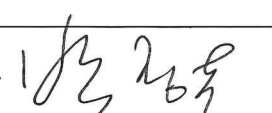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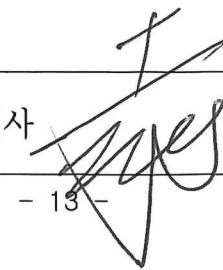
□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 금액

- 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57,674,297,510원
- 비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32,793,703,922원
- 합계 : 89,325,001,432원 (2차 추경 대비 1,383,855,616원 증가)

(단위 : 천원)

회계구분	3차 추경 예산 (A)	2차 추경 예산 (B)	증감 (A-B)	비고
등록금회계	57,674,297	57,405,427	268,870	
비등록금회계	32,793,704	31,678,719	1,114,985	
내부거래	1,143,000	1,143,000	0	
총 계	89,325,001	87,941,146	1,38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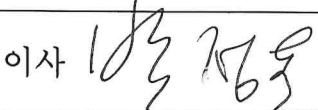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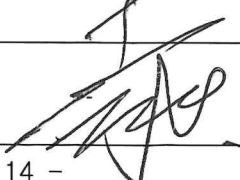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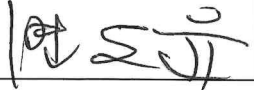
※ 내부거래 :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한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 회계간 자금 이동
(등록금 회계: 전출 / 비등록금 회계: 전입)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2023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괄표 (교비회계)

(단위: 천원)

세 입				세 출			
관 별	2023년 3차 추경예산액(A)	2023년 2차 추경예산액(B)	증감 (A-B)	관 별	2023년 3차 추경예산액(A)	2023년 2차 추경예산액(B)	증감 (A-B)
등록금 수입	58,911,050	58,687,821	223,229	보수	33,420,606	33,411,283	9,323
전입 및 기 부수입	23,927,631	22,707,885	1,219,746	관리운영비	15,213,124	14,145,456	1,067,668
교육부대 수 입	1,394,965	1,580,816	-185,851	연구 /학생경비	33,182,571	33,482,254	-299,683
교육외수입	484,388	369,653	114,735	교육외비용	508,116	627,085	-118,969
투자외기타 자산 수입	869,277	857,281	11,996	전출금	0	0	0
고정자산 매각 수입	0	0	0	투자외기타자 산지출	7,121	2,005	5,116
유동부채 입금	1	1	0	고정자산 매입지출	6,030,461	5,310,061	720,400
고정부채 입금	4,001	4,001	0	유동부채 상환	963,000	963,000	0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3,733,688	3,733,688	0	고정부채 상환	2	2	0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계	89,325,001	87,941,146	1,383,855	계	89,325,001	87,941,146	1,383,855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